

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9-28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. 27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23년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, 범정부 차원에서 손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안산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.

법적근거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주요내용

- 감면 대상자 :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
- 감면 세목 : 2023년 주민세, 자동차세, 재산세

감면 동의안 : 【붙임 2】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기타 참고사항

-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: 【붙임 5】

[붙임 2]

호우 피해자에 대한 안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

안산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(2023.7.19.)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자 :

- 가.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 라 함)
- 나.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 이라 함)

2.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)를 면제한다.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- 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